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31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2월 18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161호)과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171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대안)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.
-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 등을 조성 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 시 사업시행자와 공원관리청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바, 점검해야 할 항목에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도시공원 조성 시 환경오염 및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, 관리 이관 후 발생할 문제를

최소화하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 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범위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
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(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)
-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·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(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)
- 라.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·예술·체험·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(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)
- 마.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여야 하며,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제1항 신설)
- 바.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·식재 등의 형태, 위치,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(안 제31조제1항제1호 신설)
- 사.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(안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)
- 아.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 인정한 사항(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)
- 자. 식재기반 조성의 점검에 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(안 제31조제2항 신설)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
 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·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
  3.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·예술·체험·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

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고,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(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) ①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

여야 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·식재 등의 형태, 위치,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
  2.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
  3.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식재기반 조성의 점검에 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·식재 등의 형태, 위치,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

2.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

3.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식재기반 조성의 점검에 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31조·제32조 (생략)

제32조·제33조 (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)